

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「SOS 장학금 신규장학생」 선발 공고

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초·중·고등학생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「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」을 아래와 같이 선발·지원하고자 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.

2025. 8. 29.(금)

한국장학재단 이사장

I 선발 개요

☐ (사업명)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금

※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긴급위기 학생을 선발·지원(10개월 한시 지원)

☐ (사업목적) 재난·재해·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초·중·고등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 지속 장려

☐ (선발규모) 총 1,500명

- 학제·학년별 선발(초 5~6, 중1, 중2~3, 고) 인원은 학제·학년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(**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**)

☐ (지원내용) 선발 후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

- 지원기간: '25. 9월 ~ '26. 6월(9월 지급분은 10월 장학금 지급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)
 - ※ 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(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)
 - ※ 마음건강(위기학생 전문상담을 통해 치유·회복 지원) 프로그램 지원(~'26.6월.)

Ⅱ 선발 자격

□ (신청 자격) 아래 요건을 충족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
신청 자격	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(단,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자)
	② 국내 초·중·고교 재학생(초5~고3) ※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(상세 기준은 본 공고문 [붙임1](p.9) 참조)
	③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 • 긴급구난사유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 제 1~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*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(단,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)
	<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> ① 주소득자(主所得者)의 사망/가출/행방불명/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/유기(遺棄)/학대 ④ 가정폭력/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/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/폐업/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※ 긴급구난사유 세부 기준은 본 공고문 [붙임2](p.10) 참조
	*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 : 긴급구난 세부사유 ①~⑦의 세부 기준*을 충족하지 않으나, 가정의 경제상황 및 긴급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위 상황에 준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 판단 및 추천을 통해 결정된 경우 ※ SOS 장학금은 기초, 차상위 등의 수급자격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□ 신청 제외 대상(1개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)

- (사회적 물의)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*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 불가
- ①형사처벌(처분)을 받은 자, ②「학교폭력예방법」 제17조 제1항 제4~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
- (중복신청) '25년 꿈·다문화 장학금 선발 시 중복신청 불가
- (기 수혜자)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, 재신청 불가

III 선발 절차

□ 학교추천(신청) 후 서류·심층평가를 통해 신규장학생 선발

1단계 학교추천	2단계 서류심사	3단계 심층평가 및 최종선발
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추천 (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음)	제출서류 확인·점검, 최소 자격요건 심사	「SOS 장학금 신청서」 평가 (SOS 평가단) 및 최종 장학생 확정 ※ 장학생 선발·관리위원회 생략
'25. 9. 1. 9:00 ~ 9. 25. 18:00	'25. 10월 1주 ~ 10월 3주	'25. 10월 4주 ~ 10월 5주

※ 학교 폭력 가해 이력 외 소득·성적·출결·봉사 등 모든 자격 심사 제외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< '25. 1학기 꿈장학금 선발 대비 차이점 >

구분		1학기 꿈장학금	2학기 SOS 장학금
학교별 추천 인원		(꿈) 초 1명, 중·고 2명	제한 없음
지원 기간		대학 졸업 시까지 장기 지원	10개월 단기 지원
신청 자격	소득	기초·차상위(한부모)	긴급구난사유 해당자* (부모 실직, 중증질병, 사망 등) * 긴급구난사유 증빙을 위한 별도 증빙 불요(학교장 추천서 직인으로 갈음) * 수급 자격 무관
	성적	(초) 미심사 / (중·고) C등급 또는 7등급 이상	미심사
	출결	(초) 결석 5일 미만 / (중·고) 결석 10일 미만	
	봉사	(초) 미심사 / (중·고) 봉사활동 10시간 이상	
지원 내용	장학금	(초) 월 15만 원, (중) 월 25만 원, (고) 월 35만 원, (대) 월 45만 원	월 30만 원 (전 학제 공통)
	멘토링	멘토링 시행 (멘토링 참여 교직원 필요)	멘토링 미시행 (멘토링 참여 교직원 불요)

IV 신청기간 · 방법 및 제출서류

□ (신청기간) '25. 9. 1.(월) ~ '25. 9. 25.(목) 18시까지

□ (신청방법) ①제출 서류는 신청 학생이 준비해야 하며,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은 ②소속 학교의 신청 담당 교직원*이 온라인 제출

*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, 장학 담당교사, 학교 복지사 등

① 신청 학생은 서류를 작성·준비하여 담당 교직원에게 제출

☆ (필독)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, 만 14세 미만 학생('11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)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1인의 동의 필수

☞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카드발급 불가

※ 법정대리인 범위: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등

② 신청 담당 교직원은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(<https://eduman.kosaf.go.kr>)에 접속하여 추천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접수·제출

〈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신청 〉

 [학자금지원시스템 화면]	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(https://eduman.kosaf.go.kr) ②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→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 ③ 입력된 정보 확인 후,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
--	--

※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시 교육부 전자서명인증(EPKI)이 필요하며, 사용자 권한 승인까지 일정 시간(통상 1~3일)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

※ 학자금지원시스템 설치 및 접속 방법은 [온라인 신청 매뉴얼] 참고

□ (제출서류) 담당 교직원이 온라인(학자금지원시스템)으로 제출

☆ (필독) 작성일자 및 서명 누락, 학교장 직인 누락 등 제출서류 미비 시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(즉시 탈락)되므로, 반드시 서류 구비여부 확인 후 제출

○ SOS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자필 혹은 타이핑 입력 모두 가능하며, 문항별 작성 주체가 다르고, 신청 학년별(초5~6, 중1, 중2~3, 고) SOS 장학금 신청서 서식[서식 15~18]이 다르므로 작성 시 유의

※ 진단서, 폐업증명서 등 긴급구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음

〈 SOS 장학금 제출서류 목록 〉

구분	제출서류		세부내용		비고
신청시 제출 (신청서류)	1	신청인 기본정보	전체 학생	학생 기본정보 ※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신청 교직원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제출 불필요	서식1
	2	〈학생〉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	전체 학생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(학생용) ※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	서식2
	3	〈보호자〉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	전체 학생 부모 (법정대리인)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(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)	서식3
	4	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	만 14세 미만 학생의 법정대리인	본인 행정정보(공공 마이데이터)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위한 동의서 ※ 만 14세 미만 학생의 <u>주보호자(법정대리인) 1인 제출</u>	서식4
	5	SOS 장학금 신청서 표지	전체 학생	학생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등 ※ 신청 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·직인 필수	서식14
	6	SOS 장학금 신청서 본문	전체 학생	학업 의지·계획 및 긴급 위기 상황 등 구체적 서술	서식 15~18
필요시 추가 제출* (대상자에 한하여 제출)	7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법정대리인 (부모)	<u>부 또는 모 명의</u> 의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	행정 복지 센터
	8	기본증명서 (상세)	만 14세 미만 학생	<u>학생 본인 명의</u> 의 기본증명서(상세)	

*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는 만 14세 미만 학생의 법정대리인 미확인자 등에 한하며, 해당 대상자에게는 재단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별도 안내할 예정(반드시 기한 내 추가서류 제출 필요)

※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(8.29.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,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
V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

- (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) 학생이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 (11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)일 경우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 장학생 선발 및 카드 발급 불가
 - [서식2]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(학생용) 작성 시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수
 - ※ 법정대리인 범위 :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, 관련 법령에 따른 후견인 등
 - ※ 후견인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조손가정의 조부 또는 조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님에 유의
 - 양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,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위해 [서식4]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제출 필요

※ 참고: [서식2] 개인정보동의서 4p 법정대리인 동의란 발체



다시 도약해 도전영웅
함께 잘나 공부하세요

서식2 **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(학생용)**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(학생용)

한국장학재단 귀중

□ 한국장학재단(이하 '재단')이 본인과 의 장학금 지급,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,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3조, 제24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신용정보법') 제15조제2항,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:

(중 략)

법정대리인 동의

※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래의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

(법정대리인 1인의 서명(동의) 필요, 법정대리인 미동의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이 아닌 타인 동의 시 장학생 선발 제한 등 불이익 발생)

동의자(법정대리인) :

(서명 또는 인)

- (서류제출 전 확인) 자필서명 및 작성일자 누락, 학교장 직인 누락 등 제출서류 미비 시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(즉시 탈락)되므로 유의

< 서류심사 탈락 주요 사례 >

① [서식2,3] 개인정보 동의서 내 동의함 체크 누락, 법정대리인 동의 누락, 일자 및 서명 누락

이용기관의 명칭: 한국장학재단

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: ☒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삭제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며, 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학생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4. 학부모 동의서

■ 학부모로서의 의무(준수)에 관한 서약

본인은 신청자의 학부모(또는 보호자, 후견인, 법정대리인)로서 장학금으로 선발 시 학업을 수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였으며, 장학금이 받은 장학금은 장학금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. 만약 장학금으로 사회 불의를 일으키는 행위(음주, 흡연, 마약, 사기, 도박 등)를 저지른다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, 개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장학금 자격 박탈 및 유용한 자가 반한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, 개인정보의 이용, 학부모 동의서 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전부 동의합니다.

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

2025년 월 일

본인은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상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전부 동의합니다.

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

2025년 월 일 학생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동의자 (부)	주민등록번호	주소(자택)	
	전화번호(자택)	휴대폰	
동의자 (모)	주민등록번호	주소(자택)	
	전화번호(자택)	휴대폰	

② [서식4]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후보호자와 신청정보 상 후보호자를 불일치하게 작성

신청서(학자금지원시스템) 상 후보호자 입력 란

- 후보호자 정보

*관계: 모

*성명: 김장학

*휴대폰번호: - -

*주민등록번호: - -

*동거여부: 선택

*전화번호: - -

≠

서식4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(만 14세 미만 학생의 법정대리인용)

정보주체에 관한 사항	주부호자 성명	홍길동	주부호자 생년월일
	주부호자 연락처	010-1234-5678	장학금 신청 학생과의 관계

③ [서식15~18] SOS장학금 신청서(본문) 3쪽 이상 작성, 학생이름 및 학교이름 등 노출

서식16 중학교 1학년용 _ (SOS 장학금) SOS 장학금 신청서

※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,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

※ 소속 학교명 및 학생 이름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람 (위반 시 감점과 탈락 사유가 됨)

※ 평가위원의 가독성을 위하여 계획서는 컴퓨터(한글 HWP)로 작성을 권고(불가시 자필 작성도 가능)

※ 위 안내문구는 삭제 후 작성 가능

붙임1

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 학교 범위

설치근거법		대분류	중분류	대상
초·중·등·교육·법		초등학교		○
		중학교		○
		고등공민학교		○
		고등학교	일반고	○
			특수목적고* * 과고, 외고, 마이스터고 등	○
			특성화고* * 공고, 상고, 대안교육 특성화고, 군특성화고 등	○
			자율고* * 자사고 등	○
		고등기술학교	고등기술학교	○
		특수학교	장애인학교	○
		각종학교	외국인학교	○
			대안학교	○
영재교육진흥법		영재학교	영재학교* * 대구과고, 경기과고 등	○
대안교육기관법		대안교육기관	비인가대안학교	X
외국 교육 기관법	경제자유 구역법	외국교육기관	(제주 지역 외) 인가된 국제학교* * 대구국제학교, 채드윅송도국제학교, 칼빈매니토국제학교	X
	제주특별법	국제학교	(제주 지역 내) 인가된 국제학교* *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, 노스런던컬리지 에잇스쿨 제주, 브랜섬 홀 아시아, 세인트 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	X
-		비인가 국제학교	비인가 국제학교	X
재외국민교육법		재외 한국학교	재외 한국학교* * 재외동포 대상 초·중·등·교육 기관	X
보호소년법		소년원학교	소년원학교* * 소년원 내 초·중·등·교육 기관	X
평생교육법		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	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	X
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설치법		공군항공과학고	공군항공과학고* * 공군부서관 양성 목적	X
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		해양 학교	해사고등학교* * 선원 양성 목적	○

붙임2

SOS 장학금 긴급 구난 사유 세부 기준

긴급구난사유	세부 기준
① 주소득자(主所得者)의 사망/ 가출/행방불명/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	• 가출 및 행방불명 -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-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·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• 구금시설 : 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
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 질병 및 부상	•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 -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병, 암질환, 희귀난치질환 포함
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/유기/학대	• 아동학대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) -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
④ 가정폭력/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	• 가정폭력 :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⑤ 거주지의 화재 /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	• 화재 및 자연재해(풍수해 등 자연·사회 재난 포함)
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(副所 得者)의 휴업/폐업/ 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	• 휴업/폐업/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(신청일 기준)
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	• 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(신청일 기준)

❖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 제1~7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 및 추천을 통해 신청(단, 신청일 기준 위기 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)